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투자신탁[채권]

□ 변경 사유 : ①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

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③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8. 7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안내	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</u> 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</u> <u>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 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요약정보
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</u> <u>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 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시장위험 및 금리 변동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 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 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 기구 재산의 60%이상을 채 권에 투자하여 시장위험 및 금리 변동위험 등에 따른 기 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---	---	---	---

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28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 기준
투자자유 의사향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 기준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 기재 명확화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 투자신탁 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 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 투자신탁 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<u>취득시</u> 신용평가등급 A-이상) <u>(전자증</u>

		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	권법 제 59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
	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	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 8) (생략) 9) (생략) 10) (생략)	<삭제> 7) (현행과 같음) 8) (현행과 같음) 9) (현행과 같음)
	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	11) (생략) <신설>	10) (현행과 같음) ▶ 환매조건부 매수
	번호 정정 기재 정정	12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 (생략)	11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 (생략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기재 정정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(1) <u>제 17조 제 2항 제 1호</u> 에 따른 단기 대출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(1) <u>법 제 83조제 4항</u> 에 따른 단기 대출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 번호 정정 기재 구체화	1) 투자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의 투자전략 <신설> (3) (생략) 2) 위험관리 전략	1) 투자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의 투자전략 (3) 크레딧 전략 (4) (현행과 같음) 2) 위험관리 전략

		〈신 설〉	세부 위험관리 전략 기재 구 체화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 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 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 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 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 다.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 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기재 정정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〈신 설〉 5)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 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 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 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<u>전전영업일</u> (17시 경 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전전전영업일</u>)과 그 권리를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 수료 부과 여부〉</u> 5)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 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 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 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<u>전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전</u>

		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<u>전영업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28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<신 설>	<u>2024. 6. 30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신탁업자 정보 업데이트	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(02-2002-1111)</u> 연혁 : <신 설>	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(을지로 1가) (1599-1111)</u> 연혁 : <u>1971 년 6 월 설립, 2015 년 9 월 외환은행 합병</u>